

더불어 사는 마을을 지향하는 조례

더불어 살기.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며, 누구나 안심하면서 살 수 있는 마을을 지향합니다.

사람과 더불어 살기

이 마을에는 0 세부터 100 세 이상인 사람까지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. 그 중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등도 있습니다. 각자의 '차이'를 존중하는 것이 마을 만들기의 근원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.

사회와 더불어 살기

이 마을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이나 처해진 상황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배우고, 일하고, 놀고, 활동하고 있습니다.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소중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.

경제와 더불어 살기

이 마을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는 소중한 구민 중 한 명입니다. 지역에 힘을 주는 존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.

환경과 더불어 살기

해발 0 미터 지대이기에 재해의 위험성을 받아들이고 대규모 수해나 거대 지진 등이 일어나더라도 누구 하나 남겨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.

미래와 더불어 살기.

전 세계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하여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. 그것들을 배우면서 선두에 서서 끊임없이 달리고 싶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.

오늘 태어난 아이들이 2100 년이 되어 생활하고 있을 이 마을을 꿈과 희망으로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. 우리는 이를 실현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2021년에 이 조례를 제정합니다.

(목 적)

제 1 조 본 조례는 에도가와구(이하 '구'), 구민 등 및 사업자가 지향하는 도시의 모습을 나타냄과 동시에 구, 구민 등 및 사업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, 누구나 안심하며 나답게 살 수 있는 공생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(정 의)

제2조 이 조례에서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용어의 의미는 각각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- 1 공생사회 : 모든 사람들이 연령, 성별, 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, 국적, 장애나 병의 유무 등 사람의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고, 서로 의지하고, 누구나 안심하며 나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.
- 2 구민 등 : 에도가와구 내(이하 '구내')에 살거나 구내에서 일하거나 배우는 자 및 기타 구내에서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.
- 3 사업자 : 구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법인,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.

(구의 책무)

제 3 조 구는 공생사회의 실현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할 책무가 있다.

- 2 구는 구의 모든 직원 등이 공생사회의 이념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의 직원 등의 능력 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계발 및 기타 필요한 대응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.
- 3 구는 구민 등 및 사업자의 공생사회 이념에 관한 지식 및 이해 촉진에 힘쓰고 동시에 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계획 및 시책에 구민 등 및 사업자와 협력하여 임하는 것으로 한다.

(구민 등 및 사업자의 역할)

제4조 구민 등 및 사업자는 공생사회의 이념에 관한 지식 및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공생사회 실현을 위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협동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.

(기본적 시책)

제 5 조 구는 공생사회의 실현을 지향함에 있어서 다음에 열거하는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.

- 1 공생사회의 실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것.
- 2 공생사회의 실현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실시할 것.
- 3 공생사회의 실현에 관한 계획의 내용 및 시책의 실시 상황을

검증할 것.

(재해 등에 대한 대응)

제 6 조 구는 재해 등에 대한 대응(재해 발생에 대비한 평상시 대책 포함)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충분히 배려하며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.

(정책 등에 반영)

제 7 조 구는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행정계획, 기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이념을 최대한 존중한다.

(변화에 대한 대응)

제 8 조 구는 미래의 환경 및 사회의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한다.

부칙

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